

2023. 3. 13.(월) 10:00

**제30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일: 2023년 2월 27일

2. 제 출 자: 김은영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의원 연구단체 및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경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활동비로 나누어 규정 및 집행기준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정책연구용역, 의원정책개발비, 연구경비 등에 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의원 연구단체 구성원 상한에 관한 단서를 신설함(안 제3조)
- 의원 연구단체 심사위원회 인원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 연구경비(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활동비) 지원 및 집행에 관하여 규정을 신설함(안 제11~13조)
- 개정관련 조문 정비에 따라 별지 서식 내용을 정비함(안 [별지]서식 제2·5·6호)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6조

6.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성군의회 연구단체에서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위해 각종 토론회, 연구용역에 필요한 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등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예산집행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향상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소속의원들이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입법 능력향상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이를 위한 의정활동의 활성화 등을 목적(이하 본 조에서 “연구단체의 목적”이라 한다)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달성군의회사무국(이하 “군의회사무국”이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연구단체가 연구단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하여 입법 및 정책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위해 시행하는 연구용역을 말한다.

4. “의원정책개발비”란 군의회가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말한다.

5. “연구경비”란 연구단체가 그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지원되는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 의원 정수의 과반을 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는 군의회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대표자가 연구단체의 나머지 의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단체의 활동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를 군의회에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등) ① 대표자가 연구단체를 군의회사무국에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제2호 서식 “연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등록된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는 등록된 연구단체의, 연구 등 활동 계획의 승인이나 연구 등 활동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변경) 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에 그에 관하여 심사하도

록 회부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4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변경) 신청의 수리, 연구 등 활동계획의 승인 및 연구 등 활동비의 지원을 하며, 연구 활동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의회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은 군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연구단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등록(변경)과 그 취소
2. 연구주제 조정과 연구 등 활동 계획의 승인
3. 연구경비 지원 및 회수
4. 연구단체의 육성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연구단체 가입) 의원은 제4조에 따라 등록(변경)된 연구단체 중 1개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의장은 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원정책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연구용역수행기관에 지급한다. 계약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제12조(연구활동비) ① 연구활동비는 연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드는 경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강사수당, 전문가 자문경비, 자료 발간비
3. 그 밖에 연구단체 활동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정책

② 연구활동비는 1개 연구단체에 대한 연간 지원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

제13조(연구경비 등 집행 제한) ① 연구단체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조에 따라 승인 받은 연구 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경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단체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경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연구주제 등 변경) 연구경비 지원을 받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5조(연구활동 기간)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한다.

제16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제10조에 따라 연구경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임기종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경비 사용내역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사한 후 그 보고서를 첨부하여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장은 그 보고서를 이용하여 의원 연구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연구 활동 계획서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연 구 주 제		
주 요 내 용 요 약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 구 방 법 및 세 부 계 획	「따로 붙임」	
연구경비 분류	☐ 의원정책개발비 ☐ 연구활동비	
소요 경비	총 액	금 원(W)
	세부내역	※ 「따로 붙임」

※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3조 참조

붙임 : 연구활동 방법 및 세부계획서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			
연구 내용	당 초	주 제	
		목 적	
	변 경	주 제	
		목 적	
변 경 사 유			
변 경 내 용			
연구경비	총 액	금	원(W)
	산출내역	※ 「따로 붙임」	

※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3조 참조

- 붙임 : 1.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1부.
2. 연구경비 지출 계획 변경(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 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 추진사항 결과보고		(보고서 별첨)
연 경 구 비	수령액	금 원(W)
	집행액	금 원(W)
	잔 액	금 원(W)
특기사항		(집행 관련 증빙자료 일체 첨부)

- 붙임 1. 연구활동(중간, 최종결과) 보고서 1부.
2. 연구경비 세부 사용 내역서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 활동(중간, 최종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법률)」 [2021.12.28. 타법개정, 2022.1.13. 시행]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일: 2023년 2월 27일

2. 제 출 자: 박영동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군민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해 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토론회 등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토론회 등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토론회 등의 진행 및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8조)
- 필요한 경비에 대한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5.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등을 위원회 또는 의원이 개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각종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군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의정 활동 및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방식을 말하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

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의장과 협의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붙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게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운영)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에 대한 예산 편성·집행, 업무지원을 담당한다.

② 토론회 등의 세부적인 운영은 개최자인 해당 위원회 또는 의원이 담당한다.

③ 의회사무국에서는 개최되는 토론회 등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원

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발언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밝혀지거나 확인된 사실 및 제시된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개최한 위원회 또는 의원은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지급) 토론회 등에 참석한 사람들 중 공무원을 제외한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3호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연구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구단체 연구 등 활동비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

1. 신청자 정보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2. 신청 내용

행사명	
목적	
일시·장소	
참석인원	
기대효과	
주요내용	

☐ 첨부서류 :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론회 등 개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회장 귀하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의회규칙)」 [2022. 2. 28. 일부개정시행]

제56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조례)」 [2019. 5. 30. 제정시행]

제10조(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의장은 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연구단체에 대하여 연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 등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되, 1개 연구단체에 대한 연간 지원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연구 등 활동비 집행 등 제한) ① 연구단체는 제10조에 따라 지원 받은 연구 등 활동비 범위에서 그 연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 등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나, 그 연구 등에 관한 전부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단체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조에 따라 승인 받은 연구 등 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등 활동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 등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 등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연구단체의 연구 등 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2월 27일

2. 제 출 자: 김보경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관내 교육기관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관학협력 시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 관학협력의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관학협력 관련 예산 지원과 사후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6조)

5.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의 사업계획 수립·추진, 대상, 예산의 지원, 사후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달성군과 관내 교육기관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와 교육기관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관내 교육기관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관학협력”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관내 교육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교육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학협력 시 원칙) ① 관학협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진·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계획의 공동 수립, 공동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와 관학협력 관내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학협력 사항을 정한 경우 그 사항의 내용, 추진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문서를 작성·교환 후 그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관학협력의 대상) 군수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2. 지역의 경제·문화·역사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

3.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

4. 미래의 주역인 지역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개발·추진

5. 그 밖에 지역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호 협의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항 중 교육기관의 장과 관학협력 대상으로 협의한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사항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비용의 지원 신청, 교부절차 및 실적 보고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사후관리 및 평가 등) ① 군수와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관학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교육기관의 장은 관학협력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상호 간 해소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협력이 무익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 후 관학협력 사업을 취소 또는 중지·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하여 상호 청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체)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8조(지방대학의 책무) ①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대학은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대학은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대학은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2월 27일

2. 제 출 자: 곽동환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체계적인 수집·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수거함 설치와 관리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 폐농약 수거의 날 운영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 폐농약 처리 등과 업무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 폐농약 등 수집 장려금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 수집·처리 관련 공로에 관한 표창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5. 관계법령

- 농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를 위한 달성군수의 책무, 수거함 설치, 폐농약 수거의 날 운영, 업무 위탁, 수집 장려금 지급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폐농약이나 농약용기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수집·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반품이 불가능하거나 잔여 농약 중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농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농약용기류”란 농약을 보관하던 유리병·플라스틱·포장용 비닐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농약 및 농약용기류(이하 “폐농약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 수집·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농약 등을 가지고 있거나 방치된 폐농약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 등을 통하여 수집·처리될 수 있도록 군수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수거함 설치 등) ① 군수는 폐농약 등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폐농약 등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제5조(준수사항) ① 폐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수거함까지 운반한 후 처리하고 빈 용기는 농약용기류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농약 및 농약용기류 수거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거함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폐농약 수거의 날 운영) ① 군수는 폐농약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폐농약 수거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폐농약 수거의 날”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홍보하는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집된 폐농약 등을 사람과 가축에 피해가 가지 않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폐농약 수거의 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책임자에게 인건비 등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폐농약 등의 처리) 군수는 수거된 폐농약 및 농약용기류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 위탁) ① 군수는 폐농약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5조에 따라 수집된 폐농약 등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제9조(수집 장려금 지급) ① 군수는 폐농약 등의 수집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장려금의 기준, 금액,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표창) 군수는 폐농약 등에 대한 수집·처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체)

□ 농약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 기준에 맞는지 여부
-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 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1항에 따른 변경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의,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 ⑩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⑪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⑫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⑭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⑮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⑯ 환경부장관은 제15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⑰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2월 27일

2. 제 출 자: 박주용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발굴대상 및 발굴방법을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 대상자 관리 및 지원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 민관협력에 관한 노력을 규정함(안 제7조)
- 대상자 발굴 관련 공로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8조)
- 대상자 발굴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5.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달성군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하는 군수의 책무, 민관협력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도권 중심으로 지원되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위기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데이터 구축을 통해 위기가정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실업, 노령, 장애,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함니다)을 보호하고 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부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5.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발굴대상) 위기가구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로서 이 조례에 따른 발굴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단전·단수·단가스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2.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체납 및 각종 금융채무연체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5. 고독사 위험 및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발굴 및 사회보장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발굴방법) ① 제4조에 따른 발굴대상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장 등이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발굴 주체 외에도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을 말한다), 주민 등으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발굴대상의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단전·단수·단가스,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을 활용,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발굴대상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제4조에 따른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는 그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제1항의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7조(민관협력) 군수와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대상자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공헌이 뚜렷한 사람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정보의 보호)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에 따라 누구든지 제4조에 따른 대상자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6.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①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단체, 개인이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2월 27일

2. 제 출 자: 신달호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3조)
- 군수와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5조)
-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지도·감독 등과 기부 협조요청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10조)
-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과 관련하여 교육·홍보,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 (안 제11~12조)

5. 관계법령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등 기부를 활성화해 기부된 식품 등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군민에게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자원 나눔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막고, 사회공동체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그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에 의해 신체 및 생명 등의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소비기한 등을 준수하여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 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4. 제공자와 이용자의 발굴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6. 기부식품등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하며,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소비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의 인건비
4.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또는 사업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 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홍보) ① 군수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 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양한 매체와 방법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군수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체)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2월 27일

2. 제 출 자: 신달호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 지원대상과 대상 선정,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 (안 제5~7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 지원대상에 대한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5.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부모들을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구상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달성군의 자체적인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모두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3. “청소년 한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란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5조 및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이하 이 조에서 “지원가정”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원가정의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 지원가정의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및 교육 지원
3. 지원가정의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의 직업훈련·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
4. 지원가정의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5.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부모교육, 가족생활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관외로 전출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서비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청소년 한부모가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때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립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5(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한부모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건강진단의 신청,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2월 27일

2. 제 출 자: 양은숙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달성군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위원회 설치·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7조)
- 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 교육 관련 재정지원 및 업무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10조)
- 교육 추진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5. 관계법령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재정지원, 업무의 위탁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달성군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란 정보통신망 상에서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와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양방향성 온라인 매체인 소셜미디어를 포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정보 등을 전송하는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에 대한 사항
2.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디어 문해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추천한 사람
3. 학계, 언론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 문해교육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미디어 문해교육 자료 개발
3. 미디어 문해교육 운영
4. 미디어 문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행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및 관할 교육청, 시·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체)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원격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①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
2.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향상
3.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능력 향상
4.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민주적 소통 능력 향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정보통신매체 또는 정보통신기기에 신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지 아니하도록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2월 27일

2. 제 출 자: 이연숙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와 입양가정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입양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 입양지원금 신청과 절차, 환수 및 공제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제9조)
- 입양지원금 신청 및 지원 대장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5. 관계법령

- 입양특례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입양가정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국내 입양 관련 정책을 활성화 시키고, 입양 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으로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입양아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3. “요보호아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5. “입양신고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아동에 대한 입양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계속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군수는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의 지원

4. 입양 후 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입양지원금) ① 군수는 입양아동을 입양한 가정의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입양 장려금 성격의 축하금, 그 밖에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일괄하여 입양지원금이라 통칭하며 이를 이하 “지원금”이라 약칭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지원금 지원의 구체적 사업명, 지원 기준, 금액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2. 제6조 단서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제8조(지원절차)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 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금 입금할 때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원금 환수 및 공제) ① 군수는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그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과 유사한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한다.

제10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는 신청인이 군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그 다음달부터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 관리)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입양지원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입양지원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30일)		
입양아동 부 모	성명 (관계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양 아동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입양기관				
	입양일		년	월	일
입금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입양지원금 지급 사실 통지 희망 여부			☐ 통지 희망 (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양기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이
하
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본인은 해당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입양사실 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 아니요 ☐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실명확인, 신청내용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양관련 자료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입양지원금 신청 및 지원 대상

[illegible]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체)

□ 입양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20조(입양기관) ①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 ⑤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⑥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을 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제62조(입양의 신고)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민법」 제869조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민법」 제867조에 따라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73조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민법」 제871조제2항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3월 8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 맞지 않은 조문을 개정하여 상위법에 일치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제8조) 및 협의회의 운영 등(제9조)에 관한 사항 개정
 - 제2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로 개정
 -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조를 각각 삭제
- 제3장 제목, 제11조의 제목,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각각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개정

5.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 따른 조문을 변경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
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제11조의 제목,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제
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전통상
업보전구역”을 각각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통산업보전구역”을 각각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보전활동”을 “보존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전에”를 “보존에”로 한다.

조례 제2382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존속기한)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2에서 정한 기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회의 구성)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회장1명과 제4항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③ 회장은 부군수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임명직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내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군 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 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군의유통산업분야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인 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유통업무 담당부서 과장	④ <삭제>

현행	개정안
⑤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u>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⑥ <u>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 1. <u>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u> 2. <u>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 3. <u>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제9조(협회의의 운영 등) ① <u>협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② <u>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③ <u>협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u>	⑤ <삭 제> ⑥ <삭 제> 제9조 ①~⑥ <전문 삭제>

현행	개정안
④ 협의회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군 내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5. 그밖에 대·중소유통기업간의상생 협력촉진,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 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3장 <u>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u>	제3장 <u>전통상업보존구역</u>-----

현행	개정안
제11조(전통산업보전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u>전통산업보전구역</u>을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할 수 있다. 제1호, 제2호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u>전통산업보전구역</u>을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u>전통산업보전구역</u>을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u>전통산업보전구역</u>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u>전통산업보전구역</u>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u>전통산업보전구역</u>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생략) 제12조(전통산업보전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u>전통산업보전구역</u>을 지정·변경·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4.(생략)	제11조(전통산업보존구역-----)①- ----- ----- ----- -----<u>전통산업보존구역</u>----- ----- 제1호, 제2호 (현행과 같음) ② -----<u>전통산업보존구역</u>----- ----- ----- ----- ③ -----<u>전통산업보존구역</u>----- ----- ----- ----- 1. <u>전통산업보존구역</u>----- 2. <u>전통산업보존구역</u>----- 3. <u>전통산업보존구역</u>----- 4. (현행과 같음) 제12조(전통산업보존구역-----) -----) -----<u>전통산업보존구역</u>----- ----- ----- 1.~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u>보전활동</u> 및 지원)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u>보전에</u>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u>보존에</u>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2382호,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82호, 2015.11.10.) <u>제1조 (시행일)</u>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설 >	<u>제2조 (존속기한)</u>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2에서 정한 기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3. 1. 23.]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5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0. 10. 20.>

[본조신설 2015. 11. 20.]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7. 22., 2019. 9. 27.>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9. 9. 27.>

1. 해당 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해당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신설 2019. 9. 27.>

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1의2.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3.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는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4.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3월 8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을 ‘강행’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안 제12조)

○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안전 발생 시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5.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과 관련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강행’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안전 발생 시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구성·운영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위원회는 안전에 대한 심의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구성하고, 해당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절차의 종료 직후 자동 해산한다.

제14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행위에 관한 특례) 이 조례의 시행 후 제14조제4항 개정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될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한 군수의 위촉행위는 종전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임기가 존속 중인 위촉위원에 대한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촉행위를 한 때 그 위촉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군수는 사회적경제 발전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u>구성·운영한다.</u>	제12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 _____ _____ _____ ----- <u>구성·운영할 수 있다.</u>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 ④ <u>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⑤ <u>군수는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u> ⑥ ~ ⑦ (생략)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위원회는 안전에 대한 심의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구성하고, 해당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절차의 종료 직후 자동 해산한다.</u> ⑤ <u><삭 제></u> ⑥ ~ ⑦ (현행과 같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3월 8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안전 발생 시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제5항)
- 위원 임기 조항 삭제(안 제16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과 관련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기 위해 안전 발생 시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상설위원회 임기 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회는 안전에 대한 심의·자문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구성하고, 해당 안전의 심의·자문에 대한 의결절차 종료 직후 자동 해산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행위에 관한 특례) 이 조례의 시행 후 제15조제5항 개정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될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한 군수의 위촉행위는 종전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기가 존속 중인 위촉위원에 대한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행위를 한 때 그 위촉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구성) ① ~ ④ (생략) ⑤ <신설>	제15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한 의결절차 종료 직후 자동 해산한다.</u>
<u>제16조(위원의 임기 등)</u> ① <u>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u> ② <u>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u> <u>1.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u> <u>2.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u>3. 품위 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4. 그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u>	<u><삭제></u>

참고

상위 및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3월 8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영어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사업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실용영어 특성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명 수정
 - (당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
 - (변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 지원 사업명 변경과 사업 확대(안 제2조, 제3조)
 - 영어마을 체험학습을 영어 체험학습으로 변경
 - 어린이집 영어교육 지원 추가(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5항)
- 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조문 정비
 -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주민의 범위를 반영하여, 군민의 범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삭제(안 제2조)
 - 수강생을 군민에서 군에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임직원으로 확대(안 제4조)
- 위탁사무의 범위 조문 추가(안 제6조)
- 영어 공교육 지원의 범위를 확대 및 근거 법령 정비(안 제8조)
- 어린이집 영어교육 지원사업 근거 조항 추가(안 제9조)
- 준용 조례 명시(안 제10조)

5.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지방자치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명을 변경하고 어린이집 등 사업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실용영어 특성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규정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영어교육 지원 활성화로 글로벌 인재 양성과 국제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글로벌 인재양성과 국제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하는 영어교육 사업의 실시·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초·중·고교를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군민”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원어민 영어교실”이란 원어민 강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어강좌를 말한다.
5. “영어 체험학습”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 교육 시설 내에서 영어권 문화 및 생활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상 영어 학습”이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영어 학습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실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 영어교육 지원사업
2. 원어민 영어교실 개설·운영사업(원어민 강사 파견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 밖에 이에 부수된 사업)
3. 영어 체험학습 개설·운영사업(학습 일정 수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 밖에 이에 부수된 사업)
4. 화상 영어 학습 개설·운영 사업(화상영어 학습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수강생 관리, 그 밖에 이에 부수된 사업)
5. 어린이집 영어교육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수강생) 제3조 각 호에 따른 영어교육 사업의 수강생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어린이집 원아, 군민, 군에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 주민도 사업의 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위탁업무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원어민 영어교실의 원어민 강사료, 보조 강사료
2. 영어 체험학습의 위탁교육비
3. 화상영어 학습의 수강료

② 군수는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영어 공교육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1호의 사업으로써 관내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그 밖에 그에 따르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원어민 교사 채용 지원
2. 원어민 영어교실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한국인 보조교사 채용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 교부결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제9조(어린이집 영어교육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5호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그 밖에 그에 따르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영어교사 방문 교육 지원
2. 그 밖에 어린이집 영어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지원

제10조(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 법령[발체]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5.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7조(주민의 권리)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3월 8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기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42에 위치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 2020. 9. 구지면 달성2차로 221 신축 이전하여 제2조(위치)에 대한 수정을 실시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2조(위치) 1호의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의 주소를 수정하고자 함.

5.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의 주소를 기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42에서 구지면 달성2차로 221로 수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논공읍 논공로 242”를 “구지면 달성2차로 22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 대구광역시 달성군 <u>논공읍 논공로 242</u> 2. (생략)	제2조(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 대구광역시 달성군 <u>구지면 달성2차로 221</u> 2. (현행과 같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⑥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3월 8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2022년 달성(향토·전통)음식경연대회 미운영으로 2023년도 수입의 예치금 회수, 지출의 예치금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변경되어 지방 기금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변경계획(안)
－ 식품진흥기금 총 비교증감액: 금 34,045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편성목)	경정액	기정액	증 감
수 입 변경 계획	수입 총계	186,796	152,751	34,045
	· 세외수입	44,000	44,000	－
	· 보조금	26,000	26,000	－
	· 보전수입 등			
	－ 예치금 회수(714-01)	116,796	82,751	34,045
지 출 변경 계획	지출 총계	186,796	152,751	34,045
	· 식품진흥(식품진흥기금)	52,500	52,500	－
	·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133,756	99,711	34,045
	－ 보전지출			
	예치금	103,426	67,711	35,715
	－ 반환금 기타	30,330	32,000	△1,670
	시비보조금 반환금	10,330	12,000	△1,670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	20,000	20,000	－
	기타	540	540	－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6. 검토의견

- 본 기금의 운용 변경계획안은 2022년 달성(향토·전통) 음식경연대회의 미운영에 따른 예치금액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 반영으로 총 수입액은 1억8천7백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금액은 지정액 8천3백만 원에서 3천4백만 원 증액된 1억1천7백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억8천7백만 원이며, 예치금액은 지정액 6천8백만원에서 3천5백만 원 증액된 1억3백만 원이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지정액 1천2백만 원에서 2백만 원 감액된 1천만 원입니다.
-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22년도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이 변경되어 수입 및 지출의 예치금을 변경 조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심의요구서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심의요구서

심의요지	○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의																																																															
심의사유	○ 기금 결산에 맞는 예치금액 반영 및 보조금 반환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의 요구																																																															
변경·심의 사항	○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단위 : 천원) <table><tr><th>구 분</th><th>세부사업(편성목)</th><th>경정액</th><th>기정액</th><th>증 감</th></tr><tr><td rowspan="5">수 입 변경 계획</td><td>수입 총계</td><td>186,796</td><td>152,751</td><td>34,045</td></tr><tr><td>· 세외수입</td><td>44,000</td><td>44,000</td><td>—</td></tr><tr><td>· 보조금</td><td>26,000</td><td>26,000</td><td>—</td></tr><tr><td>· 보전수입 등</td><td></td><td></td><td></td></tr><tr><td>－ 예치금 회수(714-01)</td><td>116,796</td><td>82,751</td><td>34,045</td></tr><tr><td rowspan="9">지 출 변경 계획</td><td>지출 총계</td><td>186,796</td><td>152,751</td><td>34,045</td></tr><tr><td>· 식품진흥(식품진흥기금)</td><td>52,500</td><td>52,500</td><td>—</td></tr><tr><td>·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td><td>133,756</td><td>99,711</td><td>34,045</td></tr><tr><td>－ 보전지출</td><td></td><td></td><td></td></tr><tr><td>예치금</td><td>103,426</td><td>67,711</td><td>35,715</td></tr><tr><td>－ 반환금 기타</td><td>30,330</td><td>32,000</td><td>△1,670</td></tr><tr><td>시비보조금 반환금</td><td>10,330</td><td>12,000</td><td>△1,670</td></tr><tr><td>과징금 과오납금 반환</td><td>20,000</td><td>20,000</td><td>—</td></tr><tr><td>기타</td><td>540</td><td>540</td><td>—</td></tr></table>	구 분	세부사업(편성목)	경정액	기정액	증 감	수 입 변경 계획	수입 총계	186,796	152,751	34,045	· 세외수입	44,000	44,000	—	· 보조금	26,000	26,000	—	· 보전수입 등				－ 예치금 회수(714-01)	116,796	82,751	34,045	지 출 변경 계획	지출 총계	186,796	152,751	34,045	· 식품진흥(식품진흥기금)	52,500	52,500	—	·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133,756	99,711	34,045	－ 보전지출				예치금	103,426	67,711	35,715	－ 반환금 기타	30,330	32,000	△1,670	시비보조금 반환금	10,330	12,000	△1,670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	20,000	20,000	—	기타	540	540	—
구 분	세부사업(편성목)	경정액	기정액	증 감																																																												
수 입 변경 계획	수입 총계	186,796	152,751	34,045																																																												
	· 세외수입	44,000	44,000	—																																																												
	· 보조금	26,000	26,000	—																																																												
	· 보전수입 등																																																															
	－ 예치금 회수(714-01)	116,796	82,751	34,045																																																												
지 출 변경 계획	지출 총계	186,796	152,751	34,045																																																												
	· 식품진흥(식품진흥기금)	52,500	52,500	—																																																												
	·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133,756	99,711	34,045																																																												
	－ 보전지출																																																															
	예치금	103,426	67,711	35,715																																																												
	－ 반환금 기타	30,330	32,000	△1,670																																																												
	시비보조금 반환금	10,330	12,000	△1,670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	20,000	20,000	—																																																												
	기타	540	540	—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기금법 제11조(기금운영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 운용 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 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7.24.>

※ 지방재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항목의 정책사업에 해당 (정책사업·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각각을 의미)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참조

－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시, 기존 ‘재무활동’(예치금의 상위 개념) 금액의 20%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 필요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재)달성장학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3월 8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현재 (재)달성장학재단의 경우 군 교육정책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재)달성교육재단 출범시 상근 임·직원의 사무공간 및 회의실, 진로·진학 상담실 등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사용기간 : 2023. 4. 1. ~ 이전 시 (5년 단위 재계약)
- 사 용 자 : (재)달성장학재단
- 허가재산 :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 2층, 5층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
- 사용면적 : 348.68㎡(2층: 25.89㎡, 5층: 322.79㎡)
- 사용목적 : (재)달성장학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확보
[진로진학상담실(2층), 사무실 및 회의실 등(5층)]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달성장학재단의 목적사업 추가를 통한 역할 범위 확장으로 설립되는 (재)달성교육재단 출범 시 상근 임·직원의 사무 공간 및 회의실, 진로진학 상담실 등이 필요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근거해 군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기간은 2023년 4월부터 별도 이전 시 까지로 5년 단위 재계약을 거치게 되며, 사용재산은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 (화원읍 성천로5) 2층 일부 공간과 5층 전체입니다.
- 달성군만의 차별화된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 재산 사용료 면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관계법령 1부. 끝.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 ③ :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④ : 생략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⑥ ~ ⑦ : 생략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 2023년 2월 27일

2. 제출자: 전홍배 의원 등 3명

3. 제안사유

- 비슬산 전기차 이용료를 낮추고, 전기차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관광객의 부담을 줄여 비슬산과 화원유원지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유 한 가지만 적용하는 단서 신설(안 제5조제1항)
- 감면 대상 확대 및 관련 조문 정비 (안 제5조제1~3항)
- 인용조례명 변경에 따른 정비(안 제4조제4항, 제15조)
- 이용료 변경(편도 요금 소인: 6000→3000, 대인:10,000→5,000)
(안 [별표1] 제1호)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비슬산과 화원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인 친환경 전기차 이용료의 편도 요금 중 소인 6,000원에서 3,000원으로, 대인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이는 내용과 이용료의 감면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여자’ 및 ‘그 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 현황, 공익상 필요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관광객의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비슬산과 화원유원지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관계법령 저촉 여부 및 내용과 형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를 “면제하거나 일부를 감면”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을 적용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가. 국빈 또는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여자

라. 그 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 현황, 공익상 필요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라. 그 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 ”을 “,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편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편 도	소 인	3,000
	대 인	5,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이용료 징수 등) ① ~ ③ (생략) ④ 징수금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용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 또는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	제4조(이용료 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이용료 면제) ①----- ----- 면제하거나 일부를 감면-----. 다만,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가. 국민 또는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여자 라. 그 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 현황, 공익상 필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달성군민

4. 그 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라. 그 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삭 제>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그 밖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한다.

[별표 1]

1.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편도	소인	6,000
	대인	10,000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별표 1]

1.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편도	소인	3,000
	대인	5,000

참고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 2023년 3월 8일

2. 제출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주민”의 정의에 관내 소재 초·중·고등·대학교 학생 및 교원 등을 추가하여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늘려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주민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 예산과정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 확대(안 제11조제1항)
- 제도 운영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안 제26조)

5.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정의하는 주민의 범위를 관내 소재 초·중·고등·대학교 학생 및 교원 등으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수 30명에서 50명으로 크게 늘여 주민의 참여기회 또한 확대하고, 포상 규정을 마련하는 사안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주민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로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따른 영향은 주민등록상의 주민뿐 만 아니라 관내 사업체와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관내 학교에 재학생과 교원에게도 미치는 특성이 있으며,
-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의 관계법령 저촉 여부 및 내용과 형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타 지자체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의 주민의 범위

-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제3호 구에 소재한 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 부산광역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제나목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었더라도 경제활동, 직업, 학업 등의 사유로 구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제3호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

-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제라목 구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군에 사무소를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다. 군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라. 군 소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과 교원 등 임직원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3.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로 하고,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을 위하여”를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을 위하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30인”을 “50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되,”를 “사회적약자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되,”로 한다.

제11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중 “공개추첨”을 각각 “무작위추첨”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한 번만”을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제출

제14조제5호 중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16조제5호 중 “군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협의회”를 “연구회”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주민참여예산 위촉직위원과 연구회 위촉직회원”을 “위원회 위촉직 위원, 지역회의 위원, 연구회 위촉직 회원”으로 한다.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포상)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상 특례) 제1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u>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u>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군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신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1. “주민”이란 <u>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u>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군에 사무소를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다. 군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u>라. 군 소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과 교원 등 임직원</u>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란 <u>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u> 3.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u>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을 위하여</u>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 ----- 「지방자치법」 제47조 ----- -----, <u>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을 위하여</u> ----- -----.

현행	개정안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u>30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구성) ① ----- ----- <u>50인</u> ----- -----.
제11조(구성)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u>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되</u> , 위촉직위원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구성) ④ ----- <u>사회적약자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되</u> ,----- -----.
제11조(구성) ⑥ 제5항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에 지원한 총 인원이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군수는 <u>공개추천</u> 을 통해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u>공개추천</u>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구성) ⑥ ----- ----- ----- <u>무작위 추천</u> ----- -----, ----- <u>무작위 추천</u> ----- -----.
제12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한 번만</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 임기) ① ----- ----- ----- <u>한 차례만</u> ----- -----, ----- -----.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u>예산편성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의견 수렴</u> 2.~ 4. (생략) 5. <u>예산편성</u> 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기능) ----- ----- 1. <u>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제출</u> 2.~ 4. (현행과 같음) 5. <u>예산편성 등 예산과정</u> ----- -----

현행	개정안
제16조(운영원칙) 위원회의 운영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예산안 심의 및 편성에 대한 <u>군의회</u> 와 군수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	제16조(운영원칙) ----- -----. 1. ~ 4. (현행과 같음) 5. ----- <u>의회</u> -----
제24조(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⑤ 연구회 회장과 부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u>협의회</u>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⑤ ----- ----- -- <u>연구회</u> -----.
제25조(재정 및 실무지원) ③ <u>주민참여예산 위촉직위원과 연구회 위촉직회원</u> 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재정 및 실무지원) ③ <u>위원회 위촉직 위원, 지역회의 위원, 연구회 위촉직 회원</u> ----- ----- ----- ----- -----.
제25조(재정 및 실무지원) <신설>	④ 군수는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u>
<신설>	<u>제26조(포상)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u>
제26조(시행규칙) (생략)	제27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참고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3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 2023년 3월 8일

2. 제출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전년도 기금결산을 2021년도 계획안에 반영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운용변경 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수입 및 지출 변경 계획
 - －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 8억 원
 - －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금액: 증 560억 원
 - － 지출계획 중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증 552억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 및 지출 변경 계획
 - －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 22천 원
 - －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금액: 증 34,316천 원
 - － 지출계획 중 통합계정 예치금: 증 34,338천 원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재정법」

6.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제2항에 따라 군의회에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 주요 내용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금액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변동되어 수입 및 지출계획의 예치금 항목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 지정 재정안정화계정의 총 수입액은 2천50억 원이며, 이중 예치금 회수금액은 지정 1천475억 원에서 560억 원 증액된 2천 35억 원, 이자수입은 지정액 23억 원에서 8억 원 감액된 15억 원입니다. 이를 전액 예치금 2천 50억 원을 적립하고,
- 지정 통합 계정의 총 수입액은 63억 원이며, 이 중 예치금 회수금액은 지정액 61억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증액된 61억 9천만 원, 이자수입은 9천 5백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63억 원이며, 예치금액은 지정액 59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증액된 59억 5천만 원입니다.
- 전년도 기금결산을 2023년도 계획안에 반영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기금을 운용하고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여 안정적·계획적 재정운영을 위한 기금운영 목적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관계법령 1부. 끝.

참고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재)달성문화재단 참꽃갤러리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 2023년 3월 8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참꽃갤러리 운영주체를 문화예술과에서 (재)달성문화재단으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달성문화재단 참꽃갤러리 운영을 위한 사용료 면제 동의 요청
 - 사 용 자 : (재)달성문화재단
 - 대상재산

시설명	소 재 지	사용허가면적	사용료
참꽃갤러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청 2층)	179m ²	무상

- 허가기간 : 2023. 7. 1. ~ 2028. 6. 30.(5년)
- 사용목적 : 예술작품 전시 등을 위한 참꽃갤러리 운영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참꽃갤러리 운영주체를 문화예술과에서 (재)달성문화재단으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 공유재산인 참꽃갤러리의 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군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에 따라 적법하며 군민에게 다양한 미술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꽃갤러리에 대한 사용료 면제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관계 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 ③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④ 생략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⑥ ~ ⑦ 생략